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큰영암

신혼부부 지원 확대      이사 비용 지원

##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지침



#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지침

-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연계,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실비를 추가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지원 확대 및 주거 안정에 기여

I

## 추진근거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5조(인구정책사업)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지원대상 및 내용)

II

## 사업개요

- 신청시기 : '25. 1. 1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비용의 50% 지원(생애 1회)
    - ※ '24. 7. 1.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 (중개수수료)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 대상 주택에 입주하는 매수자(세입자)의 중개수수료 지원
    - \*\* (이사비용)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
  - 지원한도 : (이사비용) 100만원 (중개수수료) 40만원
  - 지급형태 : 현금 계좌이체
  - 지원대상 : 아래 1) ~ 3)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총사업비 : 12,000천원(군비 100%)
- 1) 영암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4. 7. 1. 이후 영암군으로 전입 및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
  - 2) 가구 구성 형태가 아래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청년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영암군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② 신혼부부 : 아래 가, 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

    가. 혼인신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함

    나.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③ 다자녀가정 : 아래 가, 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가. 가족관계등록부상 25세 이하인 미혼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다자녀가정 요건 충족에 필요한 구성원 모두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4.7.1 이후 혼인신고한 ②에 해당하는 경우 1)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대상에 해당(혼인으로 인한 합가 등)

### 3)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최근 3개월 평균)이 기준중위소득(150%)의 소득판정기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 청년1인가구(직장가입자):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3개월 평균이 119,657원 이하여야 함

**【표】 '24년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 지원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타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사비·증개보수를 지원받은 자
- 2)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식 등)인 경우
- 3)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체납자 등)

### ○ 선정방법 : 신청 순으로 접수 후 예산 초과 시 <sup>1)</sup>사회적 약자 우선 선발 후 <sup>2)</sup>소득 낮은 순 선정

- 1) 사회적 약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에 한함
 

☞ 모든 사회적 약자 해당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 2)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최근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 (가구 구성원 납입보험료 합산액) / (가구원 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x 100%의 비율이 낮은 순서로 산정

### 【사회적 약자 구분 및 정의(참고)】

구 분	정 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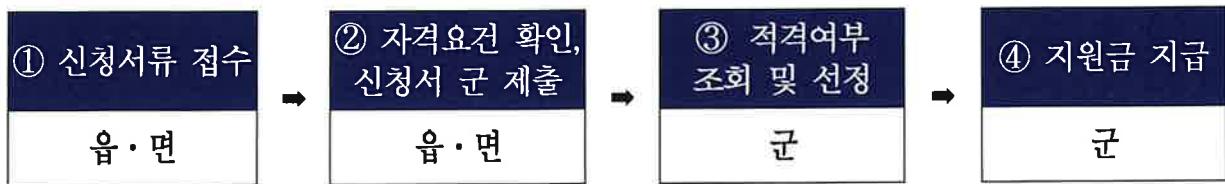
III

### 추진계획

#### □ 추진계획[상세]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1차 확인 : 읍·면
  - 신청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사업 신청 접수내용, 행복e음 시스템 입력 : 읍·면
  - 기초자료 입력 및 제출서류 일체 행복e음 시스템 업로드
- 신청자 명단 작성 후 신청서류 일체 송부 : 읍·면 → 인구청년과
- 가구소득인정액 조사요청 및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인구청년과
  -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요청 및 가구소득인정액 조사(주민복지과 협조)
    - ☞ 사업량(예산) 보다 신청량이 많을 경우 사회적 약자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지침 시달 : '25. 1월 중
-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홍보 실시 : '25. 1월 중
  - 홈페이지(슬라이드) 게재, 군 SNS 게시, 신청 공고, 보도자료 등
-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 연 중
- 신청자 1차 자격요건 확인 및 신청서 제출(읍면 → 군) : 연 중
- 지원 제외 대상자 여부 조회(체납자 등) : 연 중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연 중

## IV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수	신청서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서식 2)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3)
필수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신청인 기준, 주소 변동사항(최근 5년), 신청인 주민번호 뒷자리, 세대주와 관계,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포함 - (발급)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부부 각각 - (발급)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선택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에 한하여,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제출 - (발급)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필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가구원 각 1부 -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 -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 발급(☎1577-1000)
필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최근 3개월 확인) -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 발급(☎1577-1000)
필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약서 상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주택소재지, 계약기간, 거래금액 등 확인 가능해야 함
필수	등기부등본 (매매만 해당)	▶ 소유권 이전 확인 - (발급) 등기소,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
필수	지출 증빙서류	▶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견적서 -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세금계산서 - 공인중개업체 및 이사 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사람 이름과 [공인중개업체 ·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대표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필수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구분	우선선팔대상자	제출서류
선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li> <li>- (발급)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정부24</li> </ul>
선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증명서</li> <li>- (발급)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정부24</li> </ul>
선택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1.1. 이전 : (발급)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li> <li>- 2021.1.2. 이후 : (발급) 읍·면 행정복지센터</li> </ul> </li> <li>▶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 읍·면 행정복지센터</li> </ul> </li> </ul>
선택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증명서</li> <li>- (발급) 읍·면 행정복지센터</li> </ul>
선택	위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li> </ul>

## V

## 소득수준 산출을 위한 가구원 수 산정 및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 1) 청년 1인 가구

-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확인
-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으로 확인
  - ☞ 이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인원을 가구원 수로 산정

### 2) 신혼부부

- (가구원 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①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②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는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어도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신청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의 보험료 합산

- ①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 합산
- ② 건강보험 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납부액을 합산 계산
  - ☞ 직장(직장인이 2명 이상), 지역(지역이 2명 이상), 혼합(직장+지역)으로 구분
- ③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 대상에 포함)

### 3) 다자녀가정인 경우

- (가구원 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①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단, 25세 이상 자녀 중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하고 있을 경우,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
  - ②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는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어도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신청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의 보험료 합산
  - ①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 합산
  - ② 건강보험 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납부액을 합산 계산
    - ☞ 직장(직장인이 2명 이상), 지역(지역이 2명 이상), 혼합(직장+지역)으로 구분
  - ③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 단, 25세 이상 자녀 중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하고 있을 경우, 보험료 합산에서 제외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 대상에 포함)

## 신청서식

【서식 1】

## 2025년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연락처	휴대전화		
	e-mail주소		
⑤ 이사내용	이사일	년	월
	이사소요비용	일 원	
⑥ 중개내용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연락처	
	증거보수	원	
⑦ 주택기준	주택유형	<input type="checkbox"/> 아파트/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다가구/다세대 주택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비주택(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주거점유형태	<input type="checkbox"/> 매매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보증부월세 <input type="checkbox"/> 무보증월세 <input type="checkbox"/> 무료임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거래금액	매입 : 매매대금 _____ 만원 임차 : 보증금 _____ 만원 / 월세 _____ 만원	
⑧ 정부 및 지자체 중복·유사사업 참여여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기간: ~ ) ↳ 관련 기관명: ( ) 및 사업명: ( )		

위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반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 【서식 2】

#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귀하(신청자 및 위 1호에 기재된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관리, 유사사업 증복여부 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자격, 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아동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증명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증명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귀하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 등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관리, 유사사업 증복여부 확인

**정보 수집·이용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귀하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 등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한국공인증개사협회, 전국 시·군·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이사비 및 증개수수료 지원 및 유사사업 종복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자격, 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아동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증명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증명서

**제3자가 조회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자격, 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아동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증명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증명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는 영암군 이사비용 및 증개수수료 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조회할 수 없으며 제공받는 개인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조회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한국공인증개사협회, 전국 시·군·구)가 이용·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암군 이사비용 및 증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선정·지급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상기 기재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기관이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외 이사비 및 증개수수료 지원 관련 신청·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지원신청, 동의내용, 제출서류 등 확인
- ②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서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 【서식 3】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제공)신청			<input type="checkbox"/> 변경신청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 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주소 <sup>1)</sup>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신청 자포 함)	세대주 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 학여부 (학교명/학 년 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sup>2)</sup> (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보장 급여 신청	보장구분	기타	<input type="checkbox"/> 시설이용·입소 <input type="checkbox"/> 타법 의료급여( ) <input type="checkbox"/> 차상위본인부담경감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 <b>■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b>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와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 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용자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주거급여법」 제24조, 「기초연금법」 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아이돌봄지원법」 제35조제4호, 「장애인복지지원법」 제39조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탈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3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 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서식 3】

##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 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 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사본)

2025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